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등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 변경

3. 주요골자

- 조례명칭 「구미시일반폐기물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구미시폐기물관리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개정
- 관계법률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기준중 시정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및 규격봉투 지정판매업소외의 규격봉투 판매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일부 수정

4. 검토의견

-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을 개정해 다른 자구수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명칭을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로 조정하였음.
-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처분방식들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하고, 기타 행정사무서식을 업무처리에 맞게 수정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적용 과태료 부과기준에 사업장의 폐기물발생억제 조치명령 위반, 폐기물 처리시설변경 신고 위반,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규격통용 지정판매업소 외의 규격통용 판매행위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자원회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적용 부과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을 적용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악축산폐수정화조를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 등 13건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126호·140호)외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사항임.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과대상	전 령			계 상			비고
		부과금액 (만 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폐기물관리법	1. 사업상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상폐기물 배출자(법제26조제5항)	신 설			100	200	300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제 30조제3항 및 제44조의2제1항)				100	200	300	
	3. 폐기물 세척처리신고자가 조치 명령을 받고도 사용종지 또는 사용 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법제44조의2 제3항)				100	200	300	
	4.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 자역 또는 환경시설에 비린자(법제 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 리는 행위	2.5	2.5	2.5	3	3	3	
	나. 간미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 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 리는 행위	5	7	9	5	7	1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 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	15	19	10	15	20	
	러. 지랑,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 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30	49	20	30	5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건축폐기물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 폐기물 제삼처리 신고를 한 자는 제외)	신 설			50	70	100	

적용범위	부과대상	현행규칙						비고
		부과금액액(만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5.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제24조제3항, 제41조)		30	50	100	100	100	100	
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30조제4항)		100	0	0	100	100	100	
7.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법제39조제1항)	신 설				100	100	100	
8.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제40조)					30	40	50	
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50	100	
나.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								
9.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제43조제1항)					30	50	100	
10. 출입·점시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제43조)					100	100	100	
11.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47조제1항)					100	100	100	
12.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현행과 같음			
나.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대기환경보전법에 제외되는 행위에 한함)	신 설				10	20	30	

적용법	부과대상	한행			개칭			비고
		부과금액 (만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다.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봉투를 두지않고 배출한 경우	5	5	5	현행과 같은			
	13.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이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별세16조 제2항)	30	50	100				
	14. 규격봉투 지정판매소가 아닌 업소에서 규격봉투 판매행위를 한 경우	신 싼			10	20	30	

지 용 법	부 과 대 상	한 행			개 정			비고
		부 과 금 액 (만 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차원의제한 의제제정 의제제정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율 향상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 제2항) 가. 재활용 지정 사업자 및 제1종 지정 사업자의 경우 나. 제2종자립 사업자 및 지정 부상을 배출 사업자의 경우 2. 제품의 포장 방법 및 재질등이 기준에 관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기준보다 25% 미만 초과한때 (2) 기준보다 25% 이상 50%미만 초과한때 (3) 포장보다 50%이상 초과한때 나. 포장 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때 (2)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때 (3) 기준보다 3회를 더 포장한때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접합(라미네이션)또는 코팅(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와류, 인형 또는 유사제품의 포장재 반포 폴리 스티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 250 300 150 200 300 150 200 300 200 250 300 100 150 300 150 200 300 200 250 300 200 250 300	250 300 300 200 25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현행과 같음				

적용법	부과대상	한행			세정			비고
		부과금액 (만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마.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 촉진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의 감량화 촉진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 대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를 감량화 촉진에 실효과 없이 연두 계획 제정에 대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제조업체가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포장재 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도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류 드로(코팅) 또는 칠한(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에 대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수시기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200	250	300	한행과 간접			
		200	250	300				
		200	250	300				
		200	250	300				
		100	200	300				
		150	250	300				

제 목	부 과 대 상	회 계 정						비고
		부 과 금 액 (만 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되는 천막(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현행과 같음			
	나. 2. 식품위생법 제21조이 규정에 의한 식품접거업수증 개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거업수 및 동법 제2조이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사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	50	100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	250	300				
	(1) 일반복욕장업(공동탕, 기족탕 인증하)	100	200	3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기탕, 복합목욕탕)	50	250	3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증 개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	250	300				
	(2) 여관업 및 이인숙업	100	250	300				
	마. 3. 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소형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인상에서 1회용품 사용사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250	300				

적용법	구과대상	인행개성						비고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바.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이 교환, 판매 매장의 선지, 운임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지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성용품, 도매업, 종합수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점)은 제외한다. 가. 정용기기, 가구 및 창비수해업, 가정용 일반 금융업, 보험 및 여권업, 증권거래업, 부동산대행업, 증권고대행업, 전신금융업, 일반금융, 영화제작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드꾸(구형) 또는 칩(라미네이션)된 1회용 필기용품을 사용하여 사용지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배출기준 준수율 향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16조 제2항)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제34조 제3항)	200	250	300	현행세 김유			
		150	250	300				
		100	200	300				
		30	50	100				
		20	30	100				
		30	50	100				

적용법	부과대상	현행			개정			비고
		부과금액 (만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률	1.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신규대상)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 (법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10	20	30	현행과 같음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30	40	5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 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50	60	70				
	(리) 방류수 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70	80	100				
	(2) 1일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20	30	4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30	40	50	40	50	6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 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50	60	70	60	70	80	
	(리) 방류수 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70	80	100	80	90	100	
	나. 정화조							
	(1) 1일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	20	30	현행과 같음			
	(2) 1일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	40	50				

직 용 법	부 과 대 상	한 행			계 정			비고
		부 과 금 액 (단 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다.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1) 방류수 수질기준 20% 미만을 초과한 경우	10	20	30	현행과 같음			
	(2) 방류수 수질기준 20% 이상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30	40	50				
	(3)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50	60	70				
	(4) 방류수 수질기준 1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70	80	100				
	2.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	50	100				
	나. 성화조의 경우	10	20	50				
	3.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 성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법제11조, 제26조 또는 제33조 제2항)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만 사용한 경우							
	(1) 성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인 경우	20	20	2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	30	3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	50	5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적용법	부과대상	현행		개정			비고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50	50	50	현행과 같음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	80	8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	100	100				
	4.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가(법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	50	50				
	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	80	80				
	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	100	100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법제2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제1항)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1일 처리용량이 200m ³ 이상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이 인원이 2,000인 이상의 정화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10	20	50				
	(2)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30	50	100				

적용법	부과대상	현행			개정			비고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3)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 이상	10	20	30	현행과 같음			
	나. 내부정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1일 처리용량이 10m ³ 미만인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10	30	50				
	(2) 1일 처리용량이 10m ³ 이상인 정화조 또는 오수정화시설인 경우	30	50	8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	70	100				
	다. 1일 처리용량이 1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이 원의 500인 이상인 정화조에서 방출되는 방류수 조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허가대상)	50	70	100	50	100	100	
	마.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	30	50	
	6. 간이 오수정화조이 설치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법제15조제1항)	50	70	100	현행과 같음			
	7.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등이 명령을 위반한자(법제17조) 이상	신설			20	30	40	
	8.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며 사용한 경우(법제24조제2항또는제4항)							

적용법	분과대상	헌행			개정			비고
		부과금액 (만 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신 설			50	70	1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0	30	50	
	9.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제25조제3제2항)				20	30	50	
	10. 영업구역 기타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법제35조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	70	100	
	나. 석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체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0	30	50	
	11. 분뇨관련영업자가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30	40	50	
	12. 기술관리업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42조제2항)				30	50	100	
	13.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법제42조제3항)				30	50	100	
	14. 기술관리인들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제43조)				50	70	100	
	15. 상부를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제44조)				30	40	50	
	16.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법제46조제1항)				30	50	100	

(주) 1. 위반행위가 20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